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저작권자 _____ (이하 "권리자"라 한다)와 저작물 이용자 _____ (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에 있어, 그 이용허락의 범위와 대가 등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저작물"이란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의 대상으로서 [별지]에 기재한 저작물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모델"(이하 "모델"이라 한다)이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여 입력에 대한 예측·분류·생성 등의 결과를 산출하는 알고리즘과 그 매개변수의 총체를 말한다.
3. "인공지능 학습"(이하 "학습"이라 한다)이란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저작물 또는 가공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여 매개변수를 생성·조정하는 일체의 과정(사전학습, 추가학습, 미세조정과 이를 위한 평가·검증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상저작물을 복제·저장하거나 기술적 처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기술적 처리"란 학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상저작물의 형식을 변환하거나 대상저작물을 정제·라벨링·요약·재작성·토큰화·벡터화하는 등의 처리(질의응답 데이터의 생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가공데이터"란 이용자가 대상저작물을 기술적 처리하여 생성한 데이터(데이터셋, 임베딩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모델과 매개변수는 제외한다.
6. "대상모델"이란 본 계약에 따라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도록 [별지]에 기재한 모델을 말한다.
7. "매개변수"란 모델이 입력을 처리하여 결과를 생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내부 수치값으로서 가중치, 편향값 등을 말한다.

8. "산출물"이란 대상모델이 입력값에 따라 출력하는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코드 등 일체의 결과를 말한다.

9.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란 각각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한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대상)

① 대상저작물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하여 [별지]에 개별 저작물을 열거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대상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다.

②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저작물은 본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별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저작물의 인도)

① 권리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전송 방식, 저장 매체, 파일 규격 등)으로 대상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인도한다. 인도에는 대상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권리자는 자신이 대상저작물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인도하거나, 이용자가 그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허락한다.

③ 권리자가 대상저작물을 직접 보유·관리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저작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제1항의 기한까지 대상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허락의 범위)

①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학습을 위하여 대상저작물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1. 독점 여부: □ 비독점적 이용허락 □ 독점적 이용허락(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 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수 없는 권리자는 선택할 수 없다)

2. 이용허락하는 권리: 복제권 및 학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전송권

3. 이용 지역: □ 대한민국 □ 전 세계(단, 국외 이전에 관하여는 제13조 제5항에 따른다)

②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다만 권리자는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독점적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과 저촉되는 내용의 양도·질권 설정·신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③ 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권리자는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본 계약과 같거나 저촉되는 범위의 이용허락, 양도, 질권 설정 또는 신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 권리는 모두 권리자에게 유보된다.

제6조 (이용허락의 기간)

① 이용허락 기간은 ___년 __월 __일부터 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② 이용허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용허락 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갱신된다

(□ 적용 □ 미적용).

제7조 (대상모델과 산출물의 이용)

① 이용자는 대상모델을 이용하여 서비스(산출물의 생성·제공과 API 방식의 접근 제공을 포함한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별지]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대상모델이나 그 매개변수 자체를 제3자에게 제공·판매·이용허락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③ 산출물의 생성·이용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당사자는 이와 별도로 산출물의 생성·이용 제한, 학습에 이용한 사실의 표시 및 수익 분배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한계)

①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상저작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리자는 학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처리가 본 계약의 목적상 부득이한 변경임을 확인한다.

② 이용자는 권리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저작물의 원본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복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대상저작물, 가공데이터 또는 대상모델이 생성한 산출물로서 다른 모델의 학습에 이용하기 위하여 생성하거나 수집한 데이터 등을 본 계약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모델의 학습에 이용하거나 그러한 학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판매하는 행위
3. 대상모델이 대상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을 출력하도록 설계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대상모델을 이용하는 행위
4. 대상저작물에 부착된 권리관리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학습에 필요한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이용자는 대상모델이 대상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출력하지 아니하도록 학습데이터의 중복 제거, 산출물 필터링 등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권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이용 내역의 기록·보관)

① 이용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이용 내역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록하고 보관한다. 기록할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② 권리자는 본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매 1년마다 1회, 확인하려는 사항을 특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제1항의 기록과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이용자의 영업비밀과 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모델의 구조, 소스코드 또는 매개변수를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권리자는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 조에 따른 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가공데이터의 귀속과 이용)

① 가공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가공데이터에 대한 권리 행사는 대상저작물에 관한 권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본 계약의 목적 범위에서 가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가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판매하거나 본 계약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모델의 학습에 이용하는 등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권리자와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받고 그 이용에 대한 추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산정과 지급)

①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다음 중 당사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은 [별지]에 기재한다.

□ 일시금 금 _____원(부가세 별도) □ 기간별 정액 □ 최저보장금액 및 수익배분 □ 데이터 분량 단위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름 □ 기타(　　)

② 일시금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용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권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용료를 지급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 )%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 (진술·보증과 제3자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①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서 신탁받거나 대리·중개하는 권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범위에서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대상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그 밖의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권리자 또는 제3자가 대상저작물을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 등으로 대상저작물에 표시하였더라도 이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것

②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을 본 계약에서 허락한 목적과 범위에서만 이용한다는 것
2. 제13조 제2항의 보안조치를 이행할 기술적·관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3. 제1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를 이행할 기술적·관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③ 제3자가 대상저작물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안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그 대응에 서로 협력한다. 권리자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는 권리자가, 이용자가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대상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④ 특정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제1항의 진술·보증 위반이나 권리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 권리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권리의 확보
2. 당사자가 합의한 기준에 맞는 다른 저작물로의 교체
3. 해당 저작물의 제외와 그에 상응하는 이용료의 감액 또는 환급

제13조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정보와 본 계약의 내용(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2.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였거나 상대방의 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법령이나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

② 이용자는 대상저작물과 가공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접근 권한의 최소화와 접근 기록의 보관
2. 저장·전송 시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③ 이용자는 대상저작물 또는 가공데이터의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권리자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권리자가 제9조에 따라 제공받은 기록·자료와 그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학습에 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 본다.

⑤ 이용자는 대상저작물 또는 가공데이터를 국외로 이전(이용자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외 서

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 제1항 제3호의 이용 지역을 전 세계로 정한 경우로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지]에 기재한 국가와 범위로 이전하는 경우
2. 제2항의 보안조치를 갖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습에 필요한 저장·연산을 수행하는 경우

제14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이용허락의 필요성이나 범위 또는 이용료 산정의 기초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 조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어느 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종전 조건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당사자는 (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시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위반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권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든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대상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2. 이용자가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상저작물 또는 가공데이터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경우
3. 상대방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해산, 영업정지 또는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강제집행이 있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⑤ 본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① 본 계약이 기간 만료,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이용자는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저작물과 그 복제물(가공데이터 중 대상저작물로 복원 가능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가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저작물을 복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상모델과 그 매개변수를 제7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대상저작물을 새로 학습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유하고 있는 가공데이터는 대상모델의 유지·보수와 성능 평가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본 조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성질상 필요한 범위에서 효력을 유지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본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 대상저작물이나 가공데이터를 이용한 경우, 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와 별도로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및 지위 승계)

①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무나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합병, 분할 등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2항을 적용한다.

② 이용자에게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경영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미리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양도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8조 (분쟁해결과 준거법)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업계 관행, 사회 통념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변경, 통지, 해석의 우선순위 등)

① 본 계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된 내용은 합의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

②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 등이 변경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생긴 불이익은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본 계약은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이며, 본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우선한다.

④ 당사자는 본 계약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속합의는 본 계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⑤ 본문, 별지 및 부속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합의, 별지, 본문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특정은 가장 최근의 별지에 따른다.

⑥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무효인 조항을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⑦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아니하며,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권리자 : 성명(상호) (인)

생년월일(혹은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이용자 : 상호

대표이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별지] 대상저작물 목록(필요 시 전자파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연번	제호/파일명(또는 목록 식별자, ISWC·UCI·단체 관리번호 등)	종별	저작자/실연자	형태·규격(포맷, 용량)	제3자 권리·부담 유무
1					
2					
3					

[별지 기재사항]

1. 대상모델(명칭 및 주요 버전)과 이용 형태(생성형 서비스, 검색·분류 등):

2. 대상저작물의 특정 방식:

□ 개별 목록 □ 권리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범주( )

3. 대상모델 또는 매개변수 자체의 제3자 제공·판매·이용허락·공개(제7조 제2항):

□ 불허 □ 허용(범위:)

4. 국외 이전 국가와 범위(제13조 제5항 제1호):

5. 이용료의 금액, 산정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제11조):